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총무과장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무팀 심사필

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- 군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부 조직을 신설하고 조정하는 등 조직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행정 능력 향상 도모

2. 주요내용

- 부서 개편사항 : 실·과 변경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
 - 기획감사실 → 기획예산과
 - 인구정책과 → 인구정책실
 - 지역경제과 → 지역경제실
- 업무조정 : 신설업무 추가
 - 문화유산과 :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업무 추진

3. 개정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4.11.08.~2024.11.13.(특이사항 없음)
- 라. 성별 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없음

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획감사실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, “인구정책과, 지역경제과”를 “인구정책실, 지역경제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기획감사실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중 “실”을 “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인구정책과”를 “인구정책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지역경제과”를 “지역경제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업무 추진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 한다.

② 「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4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③ 「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

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⑤ 「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⑥ 「고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4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⑦ 「고령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⑧ 「고령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⑨ 「고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⑩ 「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 4 중 비상 1단계, 비상 2단계, 비상 3단계 부분 중 “기획감사실장”를 각각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하고 “기획감사실”을 각각 “기획예산과”로 한다.

별표 5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하고 “기획감사실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 한다.

⑪ 「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⑫ 「고령군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의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⑬ 「고령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 제2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⑭ 「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 중 “인구정책과장”을 “인구정책실장”으로 한다.

⑮ 「고령군 지역경제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 중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지역경제실장”으로 한다.

⑯ 「고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3항, 제8조제2항 중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지역경제실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기획감사실</u>, 총무과, 주민복지과, 가족행복과, 민원과, 재무과, 투자유치과, <u>인구정책과</u>, <u>지역경제과</u>, 관광진흥과, 문화유산과, 도시과, 군민안전과, 환경과, 건설과, 건축과, 농업정책과, 축산정책과, 산림녹지과를 둔다.</p> <p>② 실·과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기획감사실</u> 가. 군정 및 실 소관업무의 종합기획, 조정, 통제 나. ~ 차. (생략)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8. <u>인구정책과</u> 가. ~ 카. (생략)</p> <p>9. <u>지역경제과</u> 가. ~ 타. (생략)</p> <p>10. (생략)</p> <p>11. 문화유산과 가. ~ 차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2. ~ 19. (생략)</p>	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 ----- ----- <u>기획예산과</u>----- ----- ----- <u>인구정책실</u>, <u>지역경제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<u>기획예산과</u> 가. ----- 과 ----- ----- 나. ~ 차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인구정책실</u> 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지역경제실</u> 가. ~ 타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 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카.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업무 추진</u></p> <p>12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

〈관련 법령〉

지방자치법
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총무과	
연 락 처	054-950-6072